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2.19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9년 12월 20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2월 18일 (제170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회결

2. 제안설명요지 (사회복지과장 김문배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변경 (제2조 제2항)
 - 보건과장 → 사회복지과장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동윤)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보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규조문대비표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중 “보건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사무명	사무명
<p>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과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